

1. 개정이유

상위 법률 개정에 따른 보청기기 보조장비 비치 의무가 발생함에 따라 보청기기 보조장비에 대한 정의 및 적용 대상시설을 정하고, 장애인 이용 화장실의 대변기 등받이 세부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보청기기 보조장비 정의 및 비치 의무를 가지는 대상시설 범위를 규정함.
- 나. 장애인 이용 화장실의 대변기 등받이 세부기준을 마련함.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 략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6. 0. 00. ~ 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보청기기”를 “보청기기 및 보청기기 보조장비”로 한다.

별표1 제13호가목(3)(다)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세정장치는 대변기 등받이와 간섭되지 않아야 한다.

별표1 제13호나목(4)를 (5)로하고, 같은 목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대변기 등받이

(가) 등받이는 대변기 손잡이, 비상벨, 휴지걸이, 세정장치 등의 기타 설비 이용을 방해하지 않아야 하며, 튼튼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나) 등받이의 높이는 150밀리미터 이상 200밀리미터 이하로, 그 너비 350밀리미터 이상 400밀리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 등받이의 하단은 좌대 상단면으로부터 120밀리미터 이상 150밀리미터 이하의 높이에 설치하며, 그 각도는 힌지를 기준으로 후방 95이상 100도 이하로 하여야 한다.

(라) 등받이는 대변기 좌면 앞 끝과 등받이 표면 사이의 거리가 500밀리미터 이상 550밀리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 자세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별표2 제2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청각장애인을 위한 안내표지 하단에는 보청기기 보조장비 사용 구역임을 표기하여야 한다.

별표 3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의 읍·면·동사무소의 비치용품의 의무용품란 중 “보청기기”를 “보청기기 및 보청기기 보조장비”로 한다.

별표 3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의 우체국, 전신전화국의 비치용품의 의무용품란 중 “보청기기”를 “보청기기 및 보청기기 보조장비”로 한다.

별표 3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의 공공도서관의 비치용품의 의무용품란 중 “보청기기”를 “보청기기 및 보청기기 보조장비”로 한다.

별표 3의 문화 및 집회시설의 공연장, 관람장의 비치용품의 의무용품란 중 “보청기기”를 “보청기기 및 보청기기 보조장비”로 한다.

별표 3의 교육연구시설의 비치용품의 의무용품란 중 “보청기기”를 “보청기기 및 보청기기 보조장비”로 한다.

별표 3의 업무시설의 비치용품의 의무용품란 중 “보청기기”를 “보청기기 및 보청기기 보조장비”로 한다.

별표 3의 비교의 2 중 “보청기, 조청기 또는 강연청취용보조기 등을”을 “보청기, 조청기(청취증폭기) 등 개인의 청각 기능을 보완하거나 음성 청취를 지원하기 위한 기기를”로 한다.

별표 3의 비교의 3. 및 4.를 각각 4. 및 5.로 한다.

별표 3의 비교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보청기기 보조장비”는 공공시설의 특정 공간 내에서 청각장애인이 주변 소음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음성 신호를 명료하게 수신할 수 있도록 마이크 등으로 수집된 음성을 무선 신호를 변화하여 보청기기 또는 별도의 수신기에 전달하는 청취보조시스템(Assistive Listening System)을 말한다. 보청기기 보조장비를 비치한 경우에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 이를 비치한 위치를 안내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1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에 설치하는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부터 적용한다.

제3조(휠체어등을 비치하여야 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와 비치용품의 종류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보청기기 및 보청기기 보조장비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에 설치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비치용품의 종류등)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휠체어, 점자 안내책자, 보청기기, 장애인용 쇼핑카트, 전동보장구충전시설 등을 비치해야 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와 비치해야 할 용품의 종류는 별표 3과 같다.	제6조(비치용품의 종류등) ----- -----점자 안내책자, <u>보청기기 및 보청기기 보조장치</u> ----- ----- ----- ----- --.
<u>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u> <u>세부기준</u> (제2조제1항 관련)	<u>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u> <u>세부기준</u> (제2조제1항 관련)
13. 장애인들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13. 장애인들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가. 일반사항	가. 일반사항
(3) 기타 설비	(3) 기타 설비
(다) <u>세정장치·수도꼭지 등은 광감지식·누름 버튼식·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하여야 한다.</u>	(다) <u>세정장치·수도꼭지 등은 광감지식·누름 버튼식·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정장치는 대변기 등받이와 간섭되지 않아야 한다.</u>
나. 대변기	(4) <u>대변기 등받이</u>
< 신 설 >	(가) <u>등받이는 대변기 손잡이, 비상벨, 휴지걸이, 세정장치 등의 기타 설비 이용을 방해하지 않아야 하며, 튼튼하게 설치되어야 한다.</u>
	(나) <u>등받이의 높이는 150밀리미터 이상 200밀리미터 이하로, 그 너비는 350밀리미터 이상 400밀리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u>
	(다) <u>등받이의 하단은 좌대 상단면으로부터 120밀리미터 이상 150밀리미터 이하의 높이에 설치하며, 그 각도는 힌지를 기준으로 후방</u>

(4). 기타설비

편의시설의 안내표시기준(제3조 관련)

1. 삭제 <1999.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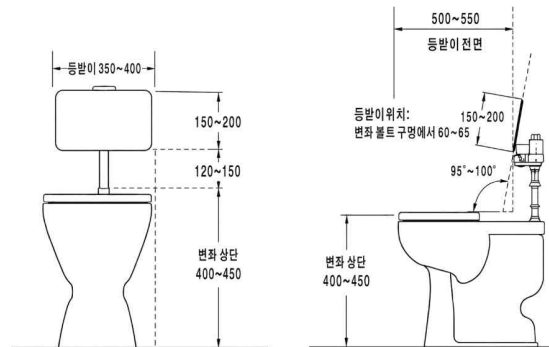
2. 안내표시기준

- 가. 안내표지의 색상은 청색과 백색을 사용하여야 한다.
- 나. 안내표지의 크기는 단면을 0.1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다. 시각장애인용 안내표지와 청각장애인용 안내표지는 기본형과 함께 설치하여야 한다.
- 라. 시각장애인을 위한 안내표지에는 점자를 병기 하여야 한다.
- 마. 설치방법은 장애인의 이동에 안전하고 지장이 없도록 배려하여야 하며, 사용장애인의 신체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휠체어등을 비치하여야 하는 공공건물

으로 95도 이상 100도 이하로 하여야 한다.

- (라) 등받이는 대변기 좌면 앞 끝과 등받이 표면 사이의 거리가 500밀리미터 이상 550밀리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 자세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5). 기타설비

편의시설의 안내표시기준(제3조 관련)

1. 삭제 <1999.6.8>

2. 안내표시기준

- 가. 안내표지의 색상은 청색과 백색을 사용하여야 한다.
- 나. 안내표지의 크기는 단면을 0.1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다. 시각장애인용 안내표지와 청각장애인용 안내표지는 기본형과 함께 설치하여야 한다.
- 라. 시각장애인을 위한 안내표지에는 점자를 병기 하여야 한다.
- 마. 설치방법은 장애인의 이동에 안전하고 지장이 없도록 배려하여야 하며, 사용장애인의 신체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 바. 청각장애인을 위한 안내표지 하단에는 보청기 보조장비 사용구역임을 표기하여야 한다.

휠체어등을 비치하여야 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와 비치용품의

종류(제6조 관련)

대상시설		비치용품	
		의무용품	권장용품
제1종 근린 생활 시설	읍·면· 동사무소	점자업무안내책자, 8배율 이상의 확대경, 공중팩스기, 보청기기 및 전 동 보장구 충전시설	편의시설 안내지도
	우체국, 전신전화국	8배율 이상의 확대경, 공중팩스기 및 보청기기	점자업무 안내책자
	공공 도서관	보청기기	저시력용 독서기 및 전동보장구 충전시설
문화 및	공연장, 관람장	<u>보청기기</u>	점자공연 안내책자
집회 시설	전시장, 동·식물원		휠체어 및 점자 전시안내책자
판매 시설	바닥면적의 합계가 1 천제곱미터 이상인 도·소매점		음성계산기
	「유통산업 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 중 대형마트 (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장애인용 쇼핑카트	전동보장구 충전시설

및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와 비치용품의

종류(제6조 관련)

대상시설		비치용품	
		의무용품	권장용품
제1종 근린 생활 시설	읍·면· 동사무소	점자업무안내책자, 8배율 이상의 확대경, 공중팩스기, <u>보청기기</u> 및 <u>보청기기 보조장비</u> , 전동보장구충전시설	편의시설 안내지도
	우체국, 전신전화국	8배율 이상의 확대경, 공중팩스기, <u>보청</u> <u>기기 및 보조장비</u>	점자업무 안내책자
	공공 도서관	<u>보청기기 및 보청</u> <u>기기 보조장비</u>	저시력용 독서기 및 전동보장구 충전시설
문화 및	공연장, 관람장	<u>보청기기 및</u> <u>보청기기 보조장비</u>	점자공연 안내책자
집회 시설	전시장, 동·식물원		휠체어 및 점자 전시안내책자
판매 시설	바닥면적의 합계가 1 천제곱미터 이상인 도·소매점		음성계산기
	「유통산업 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 중 대형마트 (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장애인용 쇼핑카트	전동보장구 충전시설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		
교육 연구 시설	도서관	저시력용 독서기, 음성지원컴퓨터 및 <u>보청기기</u>	점자프린터, 컴퓨터(정보 통신보조기기를 포함한다) 및 전동보장구 충전시설
노유자 시설	노인복지 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전동보장구 충전시설
업무 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공중이 직접 이용하는 시설에 한한다) 로서 제1종 근린생활 시설에 해당 하지 아니 하는 것	점자업무안내 책자, 편의시설 (사군구청에 한한다), 휠체어, 8배율 이상의 확대경, 공중팩스기 및 보청기기	점자업무안내 책자, 편의시설 (사군구청에 한한다), 안대시도, 컴퓨터 (정보통신보조기기를 포함한다) 및 전동보장구 충전시설
숙박 시설	관광숙박 시설		점자관광 안내책자
장례식장		입식식탁및휴대용 경사로	
운동 시설	수영장	입수용 휠체어	

비고

1. 비치용품은 출입구부근, 민원실, 안내실, 매표소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		
교육 연구 시설	도서관	저시력용 독서기, 음성지원컴퓨터, <u>보청기기 및</u> <u>보청기기 보조장비</u>	점자프린터, 컴퓨터(정보 통신보조기기를 포함한다) 및 전동보장구 충전시설
노유자 시설	노인복지 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전동보장구 충전시설
업무 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공중이 직접 이용하는 시설에 한한다) 로서 제1종 근린생활 시설에 해당 하지 아니 하는 것	점자업무안내책자 (사군구청에 한한다), 휠체어, 8배율 이상의 확대경, 공중팩스기, <u>보청기기 및 보청</u> <u>기기 보조장비</u>	점자업무안내 책자, 편의시설 (사군구청에 한한다), 안대시도, 컴퓨터 (정보통신보조기기를 포함한다) 및 전동보장구 충전시설
숙박 시설	관광숙박 시설		점자관광 안내책자
장례식장		입식식탁및휴대용 경사로	
운동 시설	수영장	입수용 휠체어	

비고

1. 비치용품은 출입구부근, 민원실, 안내실, 매표소

등 장애인등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각각 비치하여야 하며, 공중팩스기는 사무용 팩스기로 같음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보청기기"는 보청기, 조청기 또는 강연청취용 보조기 등을 말한다. 3. 장애인용 쇼핑카트는 최소 3개 이상을 쇼핑카트 보관장소 등에 비치하고, 장애인용 쇼핑카트가 비치되어 있음을 안내해야 한다. 4. 장례식장(병원, 화장시설 내 장례식장을 포함한다) 빈소의 바닥면에 높이 차이가 있고 경사로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휴대용 경사로를 비치해야 한다.	등 장애인등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각각 비치하여야 하며, 공중팩스기는 사무용 팩스기로 같음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보청기기"는 보청기, 조청기(청취증폭기) 등 개인의 청각 기능을 보완하거나 음성 청취를 지원하기 위한 기기를 말한다. 3. "보청기기 보조장비"는 공공시설의 특정 공간 내에서 청각장애인이 주변 소음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음성 신호를 명료하게 수신할 수 있도록 마이크 등으로 수집된 음성을 무선신호로 변환하여 보청기기 또는 별도의 수신기에 전달하는 청취보조시스템(Assistive Listening System)을 말한다. 보청기기 보조장비를 비치한 경우에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 이를 비치한 위치를 안내해야 한다. 4. 장애인용 쇼핑카트는 최소 3개 이상을 쇼핑카트 보관장소 등에 비치하고, 장애인용 쇼핑카트가 비치되어 있음을 안내해야 한다. 5. 장례식장(병원, 화장시설 내 장례식장을 포함한다) 빈소의 바닥면에 높이 차이가 있고 경사로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휴대용 경사로를 비치해야 한다.
--	--